

수 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

발 신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62-9, 402호 (대표자 남희섭)
대표전화 : 02-581-1643

제 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고 제2015-4호에 따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및 질의

날 짜 2015. 10. 15.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및 질의서

1. 안녕하십니까?

2. 사단법인 오픈넷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고 제2015-4호에 따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 제출 및 질의합니다.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10월 30일까지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1. 사단법인 오픈넷은 귀 위원회의 금번 심의규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정보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심의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심의규정 조항을 삭제하여 제3자 신청 및 직권 심의를 가능하도록 하는 금번 심의규정 개정안은,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거의 없는 반면, 남용 위험성만 높은 내용입니다.

귀 위원회가 초기에 개정 사유로 내세웠던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과의 상충도 200인 이상의 법률가들도 상위법 충돌로 볼 수 없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위험을 우려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도 될 수 없는 제3자가 자신에 대한 글도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글을 위원회에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는 사실상 고위공직자, 연예인, 종교지도

자, 기업가 등 정치적, 경제적 권력 계층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을 자발적인 지지·비호 세력, 유관 기관 등이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될 것입니다. 임시조치 사례들을 보면, 주로 이러한 경우 대량으로 신고된다는 특성이 있고, 한 사안에 대한 인터넷에 대한 검색결과 전체가 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경제적 권력층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자유롭게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검열 가능성과 권한을 넓히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억제되어야 합니다.

박효중 위원장이 '공인의 명예훼손성 게시글에 대해서는 법원의 유죄 판단 전에는 제3자의 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개인 의견을 밝혔으나, 심의규정에는 명문화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공인'의 범위, '판결을 받은 표현'의 범위도 모호합니다. 고위공직자의 친지, 측근이나 종교지도자, 기업이나 유명 법인, 연예인, 교수, 법률가, 의료인 등의 전문가들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 역시 위축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이들을 공인으로 분류할 것인가는 매우 판단이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또한 귀 위원회는 사회적 약자 혹은 성행위, 몰카 동영상 피해 여성들의 사례를 들며 폭넓은 조치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근거를 새롭게 들고 있지만, 이는 '대리인'의 해석을 넓게 하거나 권리침해정보가 아닌 불법정보로 처리하는 등 현행 규정으로도 필요한만큼 충분히 보호할 수 있고, 또한 논리적으로 순수한 사인에 대한 글이 본인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3자의 신청 및 직권 심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상정할 수 없음을, 실제 업무를 하고 있는 귀 위원회 측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본인이 소명하지 않은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수사권도 없고 법률전문가 로도 구성되어 있지 않은 귀 위원회가 해당 글이 근거 있는 사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비방의 목적만이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 위법적인 판단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2008년에 귀 위원회가 경찰청으로부터 정부, 대통령, 경찰청장 비난 게시글에 대한 심의 요청을 다수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만일 이번 심의규정이 개정되어, 추후 사회적 이슈와 연관된 글이 귀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귀 위원회는 국민의 대대적인 비판 여론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개정안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없고 위험성만 있는 상황에서, 문제없이 운용되고 있는 현행 규정의 개정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이와 관련된 질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요청드립니다.

2. 급하게 추진된 심의규정 개정안이 정당성을 획득하려면, 기존 규정의 문제, 새로운 규정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소명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운용 계획과 우려되는 폐단에 대한 방지책도 미리 수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오니 성실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2-(1). 심의규정이 개정되면,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심의신청 자격이 당사자, 대리인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로써 제3자 신청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귀 위원회의 직권 심의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명예훼손 정보에 대한 행정검열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제3자 등이 URL 등 '정보 위치를 특정'하여 신청한 경우에만 심의를 개시할 것인지, 아니면 귀 위원회의 '직권 모니터링' 혹은 제3자등이 '문제되는 표현 내용만을 적시'하고 관련 인터넷 내 게시물들을 모니터링하여 심의해달라는 신청도 받아들일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2). 개정안 제15조 제1항은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없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당사자가 허무인이거나 법인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심의 개시 사실을 모든 피해당사자에게 사전에 알려 처분불원의사를 확인할 것인지, 이 경우 처분불원의사가 있는 피해당사자와 접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피해당사자가 자연스럽게 심의 사실을 알게 되어 처분불원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이를 적용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3). 위원장이 공언한 '공인에 대한 심의 개시 제한'에 대한 사항을 어떻게 공식화할 것인지와 '공인'의 범위, '판결을 받은 표현의 범위', '사법부의 판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판결을 받은 표현'이 일부 있고 그렇지 않은 정당한 비판글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글 전체에 대한 삭제 결정을 내릴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표현의 신청인들이, 귀 위원회가 해당 표현이 '판결을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심의를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평등권 위배 등 위헌, 위법성을 주장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4). 기존 심의규정 운용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기존 심의규정으로 인하여 개인의 권리침해정보에 대하여 제3자 신청이 있었던 사례, 횡수 등 기록이 있다면 이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 사인의 성행위 동영상을 불법정보(음란물 혹은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로 처리하면 귀 위원회가 기존 성행위 영상 피해당사자의 신고 내역을 참작하여 적극적인

직권 모니터링 및 심의가 가능하였을텐데, 왜 이를 권리침해정보로 분류하여 신고가 있는 경우에만 소극적으로 심의하여 왔는지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6). 심의규정 개정은 상당한 절차가 필요한 것이기에, 보통 심의규정 내 여러 조문에 대하여 그간 지적된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개정 필요성에 여부에 대한 논의를 거치고 통합적인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불법정보 비율이 전체 게시물의 70% 이상인 경우에만 사이트나 계정 전체를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내부준칙 수립시(2012. 1. 5. 2012년 제1차 전체회의 의결사항, 일부 불법, 유해 정보 시정요구 개선안에 관한 건)에도 통신심의국 스스로 차기 심의규정 개정시 이를 반영하도록 한다고 천명한바 있습니다. 또한 귀 위원회가 주장하고 있듯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와 통일하려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불법정보 외의 다른 일반 유해 정보를 심의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보통신망법 전체와의 체계조화를 맞추려면 불법정보만 삭제, 차단의 시정요구를 하여야 하고, 청소년유해정보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접근만을 제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현행 심의규정에 대하여 제기되는 의견이 많음에도 해당 규정들에 대해서는 개정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오로지 아무 문제없이 운용되고 있던 권리침해정보 심의개시 조항, 단 하나에 대해서만 급하게 개정이 추진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규정 개정 진행이 정당하기 위하여는, 위 조항들도 함께 귀 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개정 필요성 논의가 이루어지고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각 조항을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결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판단되는바, 다음 회의시 이를 상정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7).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자료, 개정 필요성에 대한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분석자료 혹은 의견서 등의 문서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있다면 이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후 심의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예정된 의견수렴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 1회 외에는, 전문적이고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따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바, 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기존 규정의 문제점과 개정안의 효과 등을 논의하는 등 선진적인 의견수렴절차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

2015 . 10. 15.

사단법인 오픈넷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귀중